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60
------	-----

제출년월일: 2006. 03. 20.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임대주택법 관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m'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자동차 관련 개정 (안 제2조, 제3조)
- 나.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과 동법시행령에 임대주택의 임대의 무기간을 분리 규정함으로써 감면조례상 조문 수정 (안 제11조)
-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 (안 제15조, 제16조의2항, 제21조)
- 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대상 사업 확대 (안 제23조제1호)
- 마.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재산 취득(등기)기한 폐지 (안 25조제1항)
- 바.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수정 (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 2006- 60호
- 의견 및 제출사항 없음.

나. 관련공문 : 세정과-11197(2005.12.21)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 · 지상 건축물 · 주택”으로 한다.

제21조 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동조제1항제2호의2 · 제2호의3 · 제2호의4”를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을 “취득”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및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 본

문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5조 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제8조 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하며, 제12조제2항 단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제3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생략)</p> <p>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p> <p>2.~4.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 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p> <p>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 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 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 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 은 제외한다.)</p> <p>2.~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p> <p>2.~4.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 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p> <p>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 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 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 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 은 제외한다.)</p> <p>2.~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본문생략)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 3. (생략)</p> <p>② (본문생략)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 3. (생략)</p> <p>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본문 현행과 같음) -----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p> <p>1.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본문 현행과 같음) -----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p> <p>1.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 삭제 〉</p>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u>2005년12월31일까지</u> <u>취득</u>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p> <p>1 ~ 2. (생략) ② (생략)</p> <p>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u>농업기반공사</u>가 동법 제1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①----- <u>취득</u>-----</p> <p>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7조(<u>한국농촌공사</u>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u>한국농촌공사</u> 및 농지관리기금 법」 ----- <u>한국농촌공사</u>-----</p>